

자료번호	A1-2008-0015
자료명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전문가

◆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 1)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1로
- ② 없다 → 2로

/문 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조항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① 어려움이 있었다 → 1-2로
- ②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 2로

/문 1-2)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를 몰라서
-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서
- ③ 분야별로 관련 법률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 ④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 ⑤ 기타()

/문 2) 다음 법률 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부 록

-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④ 전자정부법
-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⑥ 통신비밀보호법
- ⑦ 보건의료기본법
- ⑧ 주민등록법
- ⑨ 국세기본법
- 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⑪ 형법
- ⑫ 위의 법률 어느 것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음

/문 3)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그 동안 잘 몰랐다

/문 4)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막연히 짐작하고 있는 정도이다
- ③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

- ④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는 개인정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
- ⑤ 모든 개인정보가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
- ⑥ 전혀 몰랐다

/문 5)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 분야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그 동안 잘 몰랐다

/문 6) 현재 본인의 개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생체정보(지문, 홍채, 유전자 등), 병원 진료 기록, 전과기록, 금전적 거래 기록, 본인 은행계좌번호, 학력, 경력 등)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답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7로 갈 것		→문 8로 갈 것		

/문 7)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법률규정의 미비 내지는 복잡성
- ② 교육이나 홍보부족
- ③ 정부나 사업자의 인식부족
- ④ 일반인의 인식부족
- ⑤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
- ⑥ 기타()

[문 8] 현재는 개인정보가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시급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 ⑤ 시급히, 매우 필요하다

[문 9] 정부의 각 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하다
- ② 위험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10] 정부의 각 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불쾌하다
- ② 불쾌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11] 민간의 각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구축한 개인정보 DB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하다
- ② 위험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12] 민간의 각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구축한 개인정보 DB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불쾌하다 ② 불쾌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3] 앞의 문6,7 관련하여,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기업이 각자가 구축한 DB를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하다 ② 위험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3-1] 앞의 문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기업이 각자가 구축한 DB를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불쾌하다 ② 불쾌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4] 정부, 기업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오/남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⑤-----④-----③-----②-----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⑤-----④-----③-----②-----①				

[문 15]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보통이다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되는 경우 위험성	⑤-----④-----③-----②-----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되는 경우 위험성	⑤-----④-----③-----②-----①				

[문 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 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광고기획사가 연예인에 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스캔들소문을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② 기업이 입사원서를 낸 사람들의 평판, 업무능력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③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④ 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소비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⑤ 무료만화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이용자의 만화취향이나 읽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⑥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없을 경우) 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⑦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 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문 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 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CCTV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있음)

행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②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③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텔의 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⑤---④---③---②---①			

[문 18] 다른 사람(기업 또는 정부 포함)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는 나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산이다
- ②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인격적 징표로서 나의 것이다
- ③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문 19] 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자사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 ③ 사후에 고객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④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0]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활방식, 취미, 소비성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카

드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생활방식)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 ③ 사후에 고객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④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1]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해당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 ③ 사후에 해당자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④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허용 된다
- ⑤ 공익상의 목적이므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든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2] 기업이 수집한 나의 연락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한함)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나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 ③ 사후에 내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판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판매에 관한 사실을 판매 직후에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며, 거부하는 경우 제공 받은 제3자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음)

- ④ 나에게 수익의 일부나 혜택이 제공된다면 허용 된다
- ⑤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3]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연락 정보를 제외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 ③ 사후에 소비자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판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판매에 관한 사실을 판매 직후에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며, 거부하는 경우 제공받은 제3자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음)
- ④ 소비자에게 수익의 일부나 혜택이 제공된다면 허용 된다
- ⑤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4]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 ③ 사후에 개인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제공에 관한 사실을 제공 직후에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며, 거부하는 경우 제공받은 수사기관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음)
- ④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따른 것이면 허용 된다
- ⑤ 공익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5] 정부의 각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각 개인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 ③ 사후에 개인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제공에 관한 사실을 제공 직후에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며, 거부하는 경우 제공받은 다른 기관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음)
- ④ 그 제공이 법률에 따라 행해진 것으면 허용 된다
- ⑤ 다른 기관의 이용목적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면 동의나 조건 없이 허용될 수 있다

[문 26] 앞의 문에서 제공받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 ③ 사후에 개인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제공에 관한 사실을 제공 직후에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며, 거부하는 경우 제공받은 수사 기관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음)
- ④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따른 것으면 허용 된다
- ⑤ 공익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허용 된다

[문 27]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업무의 처리가 빠르고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있을 수도 있음)

- ①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②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바람직하다
- ⑤ 매우 바람직하다

[문 28]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 이용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있을 수도 있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필요하다
- ⑤ 반드시 필요하다

[문 29]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시 정확한 신상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회원가입을 하십니까?

부 록

- ①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한다
- ② 마지못해 입력하고 대부분 가입 한다
- ③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다
- ④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문 30]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십니까?

- ① 언제나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 ② 가끔 틀린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 ③ 언제나 틀린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문 31]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문 32]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 및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②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바람직하다
- ⑤ 매우 바람직하다

[문 33] 인터넷게시판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십니까?

- ①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글을 올린다
- ② 마지못해 입력하고 대부분 글을 올린다
- ③ 대부분 글을 올리지 않는다
- ④ 절대 글을 올리지 않는다

◆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문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양 부문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찬성한다 → 2-1로
- ② 반대한다 → 2-2로
- ③ 모르겠다 → 3으로

[문 2-1] 통합적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양 부문을 굳이 달리 규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
- ② 일반 국민들의 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 ③ 법적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 ④ 양 부문에 걸쳐 법집행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 ⑤ 기타 ()

→ 응답 후 [3] 으로

/문 2-2] 통합적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통합적 법률의 제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 ② 법적 보호의 공백은 각 부문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다
- ③ 분야별 개별법이 존재하는 이상 수범자의 법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 ④ 민간부문에 관한 특칙을 둘 경우 법제통합의 의미는 크지 않다
- ⑤ 기타 ()

/문 3] 통합적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본법의 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특수한 분야별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와 일반법의 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모두 규정하도록 하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입법형식)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입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본법의 체계 → 3-1로
- ② 일반법의 체계 → 4로
- ③ 어느 것이든 무방하다 → 4로
- ④ 모르겠다 → 4로

[문 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
- ② 기본개념의 정의
- ③ 개인정보취급상의 기본원칙
-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시책
- ⑤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
- ⑥ 개인정보보호기구
- ⑦ 피해의 구제와 제재
- ⑧ 기타

[문 4] 현행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분리된 입법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에 대한 일반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문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직장		

부 록

배문3. 부서		
배문4. 근무 기간	년	개월
배문5. 직급		